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2009. 11.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차 례>

요약	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건설보증시장 구조	7
3.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9
4. 손해보험사 건설보증 경영의 문제점	19
5. 선진국 사례	22
6. 정책 대안	25
부록 : 설문조사	28

<표 차례>

<표 1> 보증보험 단계별 개방 일정(발표 안)	6
<표 2> 건설보증시장 점유율 현황(2008년도)	9
<표 3> 건설공제조합 수수료율에 미치는 영향	12
<표 4> 전문 및 설비조합 수수료율에 미치는 영향	12
<표 5>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이유(복수 응답)	14
<표 6> 건설공제조합 연구개발 및 사회공헌 지원 내용	15
<표 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	15
<표 8> 재벌 계열 손해보험사 동일 계열사 손해보험 인수 비율	16
<표 9> 건설공제조합의 손보사 계열 건설사의 보증실적과 보증수수료 수입	16
<표 10> 계열사 손해보험사 이용 압력 예상(설문조사)	17
<표 1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손보사 계열건설사 협력업체의 보증수수료와 보증실적	17
<표 12> 공제조합의 건설산업 기여도	18
<표 13> 3개 공제조합의 자본금 규모	19
<표 14> 보증기관과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비교(2008년 기준)	22
<표 15> 일본의 건설업보증회사	23
<표 16> 주요 국내 손보사 및 미국 보험사의 소유구조 비교(2007년기준)	25
<표 17> 건설보증시장 손해보험사 개방에 대한 의견	26
<표 18> 건설보증시장 개방 형태	27

<그림 차례>

<그림 1> 건설보증시장 규모 및 점유율	9
<그림 2> 규모별 손해율 및 수수료율 현황	10
<그림 3> 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손해율 추이 및 변동성	20
<그림 4> 건설보증의 손해율 추이 및 변동성(건설공제조합)	21

요 약

-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진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지난 8월 보증보험시장 독점구조 개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보증시장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음.

▶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의 문제점

- 건설보증(건설 관련 이행보증)은 현행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이라는 보험으로 분류되지만, 그 외 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모기지보험·신용보험·채무이행보증보험)과는 성격이 매우 상이하고 시장구조도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이 상당 수준 경쟁하는 구조임.
- 이와 같이 건설보증시장이 상당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시장이 독점적이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건설보증시장의 개방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또한, 건설보증시장의 구조 변화는 건설보증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지금까지 개방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 건설보증시장이 손해보험사에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는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는 영업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소기업체의 건설보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사이행능력과 신용을 면밀히 평가해야 하나 손해보험사가 이러한 체계를 새롭게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따라서, 손해보험사는 세밀한 심사 없이 신용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게 될 것임.
- 이러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가격경쟁으로 대형 건설사의 보증수수료는 인하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 인수를 꺼리는 중소건설업체는 기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인상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요구를 받게 될 것임.
- 따라서, 중소건설업체의 영업 환경은 악화되고 건설산업 구조가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개편되어 건설산업 구조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임. 건설보증시장이 손해보험사 위주로 재편되는 경우 상당수의 중소건설업체는 건설보증을 받을 수 없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음.

▶ 손해보험사 건설보증 겸영의 문제점

- 손해보험은 손해를 전제로 보험료를 받는 것이고 보증은 손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신용을 제공하고 보증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손해보험과 건설보증을 동일 시장에서 경쟁토록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손해보험사가 신용이 좋은 대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손해보험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건설보증 영업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사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는 건설보증의 손실이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손해보험 영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사에게 거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정책 대안

- 현재 건설보증시장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서울보증보험이 경쟁하는 구조이고, 건설업체가 새로운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진입할 수도 있는 시장임.
- 따라서,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현행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보증기관의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만약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건설업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보증회사 형태로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건설보증은 다른 보증보험과는 성격이 매우 상이하고 건설시장에서의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기능도 다름.
- 건설보증 구조는 건설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에 민감하고 거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보험 또는 다른 종류의 보증보험과도 겸업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보증을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으로 공제조합과 주식회사 형태의 건설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건설보증주식회사의 설립 요건을 기존의 보증보험사보다는 강화하여야 함.
- 또한, 건설보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기관만이 건설관련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함.
- 일본의 경우 특별법으로 4개의 건설업보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채권(Bond)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보증보험은 모노라인(Monoline)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건설보증시장의 개방보다는 현행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보증기관의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건설업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보증회사 형태로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보증을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으로 공제조합과 주식회사 형태의 건설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건설보증주식회사의 설립 요건을 기존의 보증보험사보다는 강화하여야 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보증보험시장 개방 논의 경과

- 2005년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과제인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에 세부 과제로 포함되어 있던 「보증보험시장 개방」을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전신)가 「보증보험 다원화 방안」으로 변경하여 KDI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공개 토론회 및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하였으나,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어 2011년 이후 재 논의하기로 결정했음.
- 그런데,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증보험시장의 경쟁도입」을 과제에 포함시켜 보증시장 개방 논의가 다시 시작됐음.
-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진입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2009년 8월 보증보험시장 독점구조 개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주제 발표(보험연구원, 보증보험산업의 신규허가 허용방안, 2009. 8. 12) 내용에 의하면 보증보험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개방하되, 1단계로 모기지보험 및 신용보증보험을 개방하고, 2단계로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을 개방하며, 마지막 3단계로 채무이행보증보험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것임.
- 단계별 개방 시기는 1단계로 개방하는 신용보증보험은 2010년 10월, 2단계인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은 2012년 4월, 3단계인 채무이행보증보험은 2013년 4월이 적합하다고 주장함(<표 1> 참조).

<표 1> 보증보험 단계별 개방 일정(발표 안)

단계	개방 범위	개방 일정 예시(제2안)
1단계	신원보증보험, 모기지 보험*	2010. 10
2단계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신용보험	2012. 4
3단계	채무이행 보증보험	2013. 4

주 : 모기지보험은 이미 개방된 상태임.

□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의 문제점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보증(건설관련 이행보증)은 현행 「보험업법」상 보증보험으로 분류되지만, 여타의 보증보험(신원보증보험·모기지보험·신용보증·채무 이행보증보험)과는 성격이 매우 상이함.
- 또한, 건설보증은 수요자도 그 외의 보증보험과는 달리 개인이 아닌 건설기업이고, 공급 구조도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에 상당한 정도로 경쟁하는 구조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의 특성과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건설보증시장 개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변화는 건설보증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지금까지 개방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본고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이 건설보증시장 및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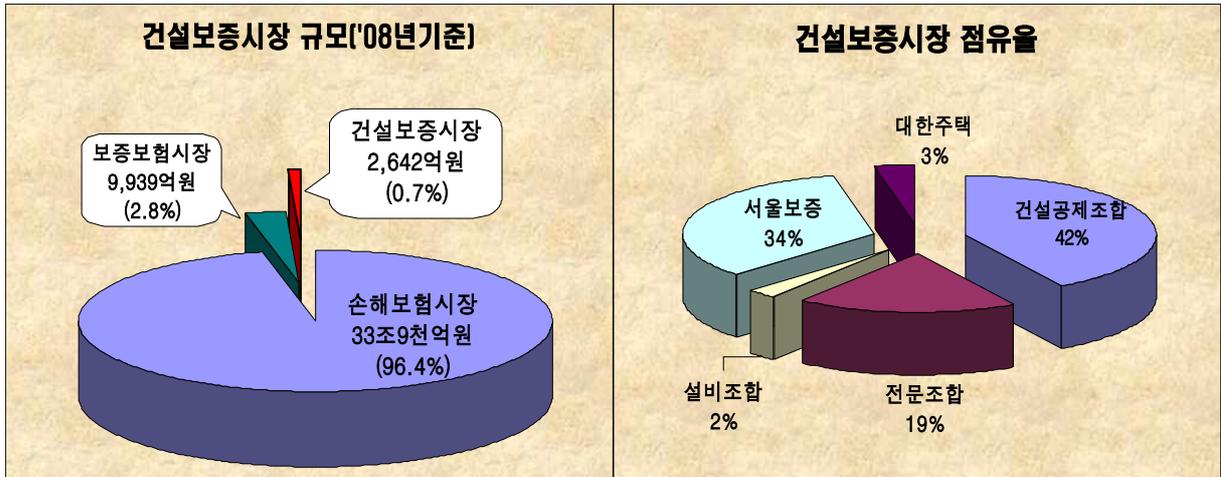
2. 건설보증시장 구조

- 건설보증시장은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과 서울보증, 대한주택보증 등 5개사의 치열한 경쟁시장으로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0.7%에 불과한 시장임(<그림 1> 참조).
- 건설관련 공제조합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있고, 서울보증은 종전의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한 주식회사이며,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공제조합이 주식회사로 전환한 주식회사임.
-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건설산업은 초기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한된 여신 및 보증만을 공급받게 되자, 금융 및 보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상호 부조적 성격의 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임.

- 건설보증시장은 보증수수료 기준 연간 2,642억원 규모로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기관이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2008년도 보증실적은 약 59조 7,604억원 규모임(<표 2> 참조).
- 즉, 건설보증시장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기관이 경쟁하는 시장 구조임.
- 이들 기관의 점유율은 보증수수료 기준(2008년)으로 건설공제조합이 42.1%, 서울보증이 34.3%,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8.8%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관련 공제조합 간에도 건설업종 간 겸업이 허용되어 경쟁하는 구조이고, 건설업자가 새로운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진입할 수도 있는 시장이며, 은행의 지급보증과도 경쟁하는 구조임.
 - 설문조사¹⁾ 결과 주력 업종이 종합건설업인 경우 5.0%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고, 주력업종이 전문건설업인 경우 8.3%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 건설업자 200인 이상이 발기하여 건설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새로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
 - 「국가계약법」상 은행의 지급보증서도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서로 허용되어 있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1) 설문조사는 종합건설업체 200개사, 전문건설업체 301개사를 대상으로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하였음. 설문 내용과 결과는 부록 참조.

<그림 1> 건설보증시장 규모 및 점유율



<표 2> 건설보증시장 점유율 현황(2008년도)

(단위 : 억원, %)

구 분	보증수수료	보증실적	비 고
건설공제 조합	1,101(41.7)	325,692(54.5)	
서울보증보험	899(34.0)	127,144(21.3)	건설관련 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491(18.6)	111,499(18.6)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63(2.4)	14,272(2.4)	
대한주택보증	88(3.3)	18,997(3.2)	하자·시공·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실적
합 계	2,642	597,604(100.0)	

자료 : 각 기관 재무제표

3.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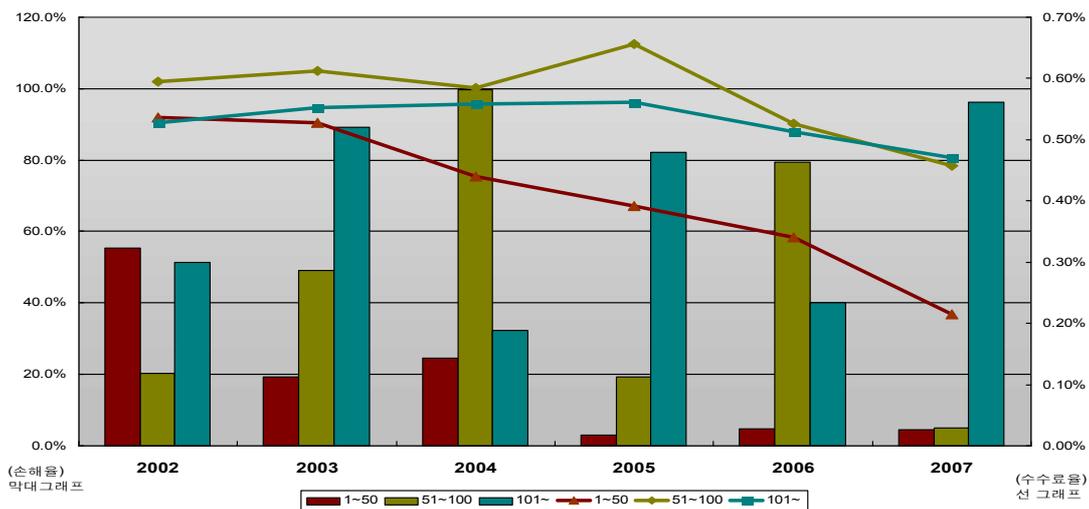
- 이하에서는 손해보험사에 대한 건설보증시장 개방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건설산업의 양극화 심화

- 건설보증시장의 손해보험사 개방은 건설산업 구조를 대형건설사 위주로 개편하게 될 것임.
- 건설보증시장이 손해보험사에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는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는 영업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왜냐하면, 중소기업체나 소규모 업체의 건설보증을 인수하려면 세밀하게 공사이행능력과 신용을 평가해야 하나 손해보험사가 새로이 이러한 체계를 갖추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손해보험사는 세밀한 심사 없이 신용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게 될 것임.
- 이렇게 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가격 경쟁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의 보증수수료는 인하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 인수를 꺼리는 중견 및 중소기업체는 기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인상 또는 담보제공 등의 요구를 받을 것임.
- 건설공제조합은 손해율이 낮은 대형 건설회사의 이탈과 이들에 대한 보증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인한 전체 손해율 상승에 따라 대다수 중소기업체들에게 보증수수료 인상 또는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것임.
- 서울보증과 건설공제조합 간 경쟁이 가속화된 최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시공능력 평가 50위 이내의 대형 종합건설업체의 보증 수수료율은 35% 정도 하락하였으나, 중소기업 종합건설업체의 수수료율은 거의 변화가 없음(<그림 2> 참조).

<그림 2> 규모별 손해율 및 수수료율 현황



-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체의 영업 환경은 악화되고 건설산업 구조가 대형건설사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건설산업 구조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임.

- 만약, 건설보증시장이 손해보험사 위주로 재편되어 손해보험사가 엄격한 신용평가와 시공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대기업 위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중소건설업체는 건설보증을 받을 수 없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음.
- 설문조사에서는 손해보험사가 자사의 건설보증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2.0%로 나타났음.

□ 중견·중소 건설사의 비용 부담 증가

- 손해보험사에게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대형 건설업체, 손해보험사 관련 건설업체 등이 건설공제조합을 이탈하여 건설공제조합은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할 것임.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 손해보험사 관련 건설업체 등이 이탈하면 보증수수료 수입이 528억원 감소할 것임. 이 중 중견건설업체가 158억원, 중소건설업체가 377억원의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임.
- 이에 따라 중견 건설업체의 보증수수료율은 2008년(0.44%)보다 0.77%p 상승한 1.65% 수준이 되어 175%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소건설업체는 2008년(0.45%)보다 0.83%p 상승한 1.28% 수준이 되어 184.4%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표 3> 참조).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잔존하는 전문건설업체는 934억원의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이고, 설비공제조합에 잔존하는 설비건설업체는 114억원의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잔존하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율은 2008년 수준(0.44%)보다 0.84%p 상승하여 190.9%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며, 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잔존하는 설비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율은 2008년 수준(0.45%)보다 0.80%p 상승하여 166.7%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표 4> 참조).

- 이상의 보증수수료율 추정은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시행됐음.

- ① 공제조합의 전체 손해율을 2008년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전제함.
- ②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손보사 계열사의 100%, 외부 신용평가 등급 상위 조합원의 60%, 토건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기업의 40%, 건설공제조합 신용 등급 상위 조합원의 20%가 이탈한다고 가정함.
- ③ 손해보험사와의 경쟁으로 보증수수료율을 35% 인하한다고 가정함.

-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진입한 건설보증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 중 중소건설사와 같은 보증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보증수수료율 인상 효과를 추정했음.

<표 3> 건설공제조합 수수료율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08년	수수료 인상폭	수수료율 예측치
중견	수수료율 상승	0.44%	0.77%p	1.65%
	보증수수료(억원)	120	151	271
중소	수수료율 상승	0.45%	0.83%p	1.28%
	보증수수료(억원)	299	377	676

주 : 손보사 계열건설사의 100%, 대형건설사 60%, 중견건설사 40%, 중소건설사 20%가 손보사로 이탈하고, 대형건설업체의 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고 가정

<표 4> 전문 및 설비조합 수수료율에 미치는 영향

구분		2008년	수수료 인상폭	수수료율 예측치
전문공제조합	수수료율 상승	0.44%	0.84%p	1.28%
	보증수수료(억원)	491	934	1,425
설비공제조합	수수료율 상승	0.48	0.80%p	1.28%
	보증수수료(억원)	68	114	182

주 : 건설공제조합의 중소기업체 수수료율 예측치 1.05%가 된다고 가정하고 수수료 인상폭을 예측함.

□ 건설시장의 조정 기능 상실

- 현재 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신용평가와 공사이행능력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회사의 재무능력 및 공사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보증 한도를 적용하여 건설업체 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일정 부분 건설업체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불법 하도급 등 건설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서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공제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회사의 27.8%가 ‘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을 거절 당해서’라고 응답한 것을 보더라도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의 스크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표 5> 참조).
- 그런데, 보증기관을 확대하면 보증기관 간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대형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보증 인수와 마케팅 위주의 영업 전략으로 건설산업의 스크린 기능을 상실함.
 - 보증기관 간 보증 인수에 대한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면 대형 건설회사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능력 있는 중소 건설회사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더욱이 건설보증시장의 구조가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손해보험사의 동일 계열 건설기업에 대한 보증공여가 일반화될 경우, 건설보증이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 심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표 5>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이유(복수 응답)

(단위 : 개사, %)

문항	전체	종합건설	전문건설
공제조합 보증이용한도 초과	89(50.6)	28(35.4)	61(62.9)
공제조합보다 보증수수료 저렴	34(19.3)	24(30.4)	10(10.3)
공제조합보다 편리	14(8.0)	8(10.1)	6(6.2)
공제조합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	49(27.8)	29(36.7)	20(20.6)
기타	39(22.2)	20(25.3)	19(19.6)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응답한 업체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한 업체의 비율임.

□ 건설산업의 연구개발·인력양성 등 위축

- 공제조합은 그 동안 건설산업의 연구개발,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국가적 차원의 공익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크게 기여하고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이 7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02억원, 설비건설공제조합이 4억원 등 총 178억원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음(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산업 연구개발 및 사회공헌 내용은 <표 6> 및 <표 7> 참조).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건설기술자 직무교육, 건설현장 실무교육, 건설클레임 교육, 해외개발사업 과정 등 건설업체를 위한 맞춤형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17회 동안 총 1,556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설기술자 직무교육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7회 동안 60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1997년 이래 3,773명의 건설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등 사회 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건설보증시장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면 공제조합이 수행해왔던 공익적 기능은 손해보험사가 대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수행해야 할 것임.

<표 6> 건설공제조합의 연구개발 및 사회공헌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건설기술교육원				2,200	1,464
국토연구원	200	200	200	533	53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800	3,000	3,200	3,400	3,500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747	811	1,853	1,083	2,368
한국건설CALS협회	80				
합계	3,827	4,011	5,253	7,216	7,865

<표 7>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산업 연구개발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8말
건설기술교육원	5,115	8,620	6,781	7,613	10,969
건설정책연구원	-	800	2,200	1,559	1,725
건설산업품질연구원	-	391	-	300	154
국토연구원	150	200	-	533	333
건설문화원	300	300	30		
건설인력관리센터	42	46	64	71	69
길포럼			62		
건설기술교육원	-	-	37	158	-
합계	5,607	10,357	9,714	10,234	13,250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제조합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 현행 건설보증시장은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전업보증보험사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보증시장 개방으로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손해보험사, 전업보증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구조로 개편되는 것임.
- 앞에서 지적했듯이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건설보증시장은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임.
- 이렇게 되면 기존 공제조합은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수수료 인상 및 담보 요구 등으로 대응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건설보증시장에 손해보험사가 진입한 경우에는 계열 소속 건설기업들이 동일 계열의 손해보험사를 보증기관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고착되어 건설공제조합은 상당한 수익 기반을 상실할 것임.
- 현행 손해보험시장은 4대 손해보험사에 의한 과점화뿐만 아니라 계열 소속 기업들이 동일 계열에 속한 손해보험사로 보험을 몰아주는 불공정 경쟁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표 8> 참조).

<표 8> 재벌 계열 손해보험사의 동일 계열사 손해보험 인수 비율

(단위 : %)

재벌	비율		재벌	비율	
	2003년	2006년		2003년	2006년
삼성	96.2	97.8	GS	72.1	80.8
현대차	99.8	94.5	LS	99.3	99.6
현대중공업	95.8	2.0	한진	96.2	12.3
현대	98.4	99.5	한화	39.6	68.8
LG	89.8	99.9	동부	89.2	90.3

자료 : 김영주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7. 10

- 손해보험사와 동일 계열에 속한 대형 건설기업들은 26개사인데, 건설공제조합의 이들에 대한 보증수수료 수입은 116억원으로 총 보증수수료 수입의 11.4%, 보증실적은 5조 6,264억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음(<표 9> 참조).

<표 9> 건설공제조합의 손보사 계열 건설사의 보증실적과 보증수수료 수입(2008년 기준)

(단위 : 억원, %)

보증수수료	보증실적
166	56,264
11.4	17.3

자료 : 건설공제조합 내부 자료

- 한편, 건설산업의 수직적 계약관계를 고려할 때, 8개 손해보험사와 동일 계열 소속의 건설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된 전문건설기업 역시 종합건설기업과 함께 동일 계열의 손해보험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건설보증시장이 손해보험사에 개방되면 전문건설기업의 59.8%가 원도급자(발주자)로부터 계열사 손해보험사를 이용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음(<표 10> 참조).

<표 10> 계열사 손해보험사 이용 압력 예상(설문조사)

문항	전문건설	무응답
받을 것이다	180(59.8)	15(65.2)
받지 않을 것이다	110(36.5)	4(17.4)
무응답	11(3.7)	4(17.4)
합계	301(100)	23(100)

-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손해보험사 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수수료는 2007년 기준 139억원으로 전체 보증수수료 수입의 32.1%를 차지하고, 보증실적은 1조 6,987억원으로 전체 보증실적의 17.7%임(<표 11> 참조).

<표 1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손보사 계열건설사 협력업체의 보증수수료와 보증실적
(20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

보증수수료	보증실적
139	16,987
32.2	17.7

자료 : 전문건설공제조합 내부 자료

- 장기적으로는 수익기반을 상실한 공제조합은 부실화되고 건설보증시장은 손해보험사 위주로 변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손보사 계열사의 100%, 외부 신용평가등급 상위 기업의 60%, 토건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의 기업의 40%,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 상위 기업의 20%가 손해보험사로 이탈하고, 보증수수료율을 35% 인하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보증수수료 수입의 43.2%인 528억원의 수입이 감소함.

<공제조합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 공제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적 비용은 공제조합이 창출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과 공제조합을 살리기 위한 공적 자금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
- 첫째, 현행 공제조합은 현재 연간 8,34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만약 공제조합이 부실화되는 경우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음.
- 건설기업들은 공제조합을 통하여 연간 보증수수료 3,726억원 절약, 용자금 이자 3,273억원 절약, 건설공사 보험 등 보험료 493억원 절약, 652억원의 배당 등의 혜택을 보고 있음.
- 공제조합은 연구개발 및 사회공헌 사업에 연간 198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표 12> 공제조합의 건설산업 기여도

(’08년기준, 단위 : 억원)

내용	건설공제조합	전문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합계	비고
보증수수료	2,200	1,340	186	3,726	계약보증기준 경쟁기관과 비교
용자금이자	2,159	1,029	85	3,273	CD금리와 비교
공제료	57	424	12	493	공제조합의 시장진출후 손보사 대비 공제비용 절감액
이익 및 배당	137	491	24	652	당기순이익 기준
공익사업 (누적금액)	94 (1,093)	100 (925)	4 (32)	198 (2,050)	국가공익사업 부담금 건설기능인력양성 등
계	4,647	3,384	311	8,342	총계 : 8,342억원

- 둘째, 만약에 공제조합이 부실화되는 경우 정부는 공제조합을 파산시키지 않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공제조합을 어떤 형태로든 구제하게 될 것임. 이렇게 되는 경우의 공적자금 규모는 12조 3,6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IMF 사태시 부실화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공적자금 약 4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했음.
- 이 당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자본금은 3조 2,500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자본금의 1.35배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임.

- 현재 3개 공제조합의 자본금 합계는 9조 1,558억원이므로 예상할 수 있는 공제조합이 부실화되는 경우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12조 3,600억원 규모가 될 것임.

<표 13> 3개 공제조합의 자본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자본금	5,007,800	3,661,000	487,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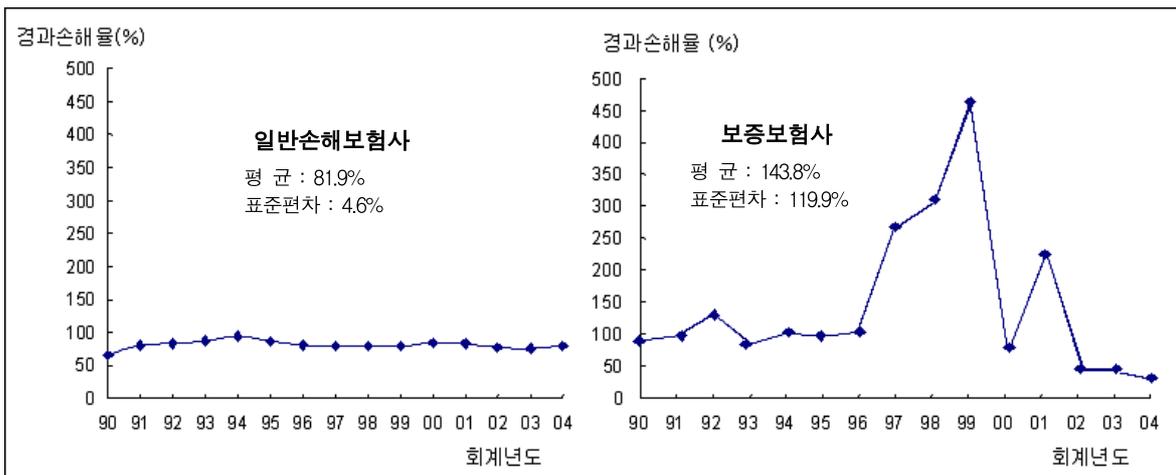
4. 손해보험사 건설보증 겸영의 문제점

□ 손해보험사 부실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의 일종인 보증보험이라는 종목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손해보험과 보증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상이함.
- 손해보험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위험을 분산시켜주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구조임.
- 반면, 보증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구조임.
- 즉, 손해보험은 손해를 전제로 보험료를 받는 것이고 보증은 손해가 없다는 전제 아래 신용을 제공하고 보증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손해보험과 건설보증을 동일 시장에서 경쟁토록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 발생
- 만약, 손해보험사가 신용이 좋은 대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손해보험에 준하는 방식으로 건설보증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사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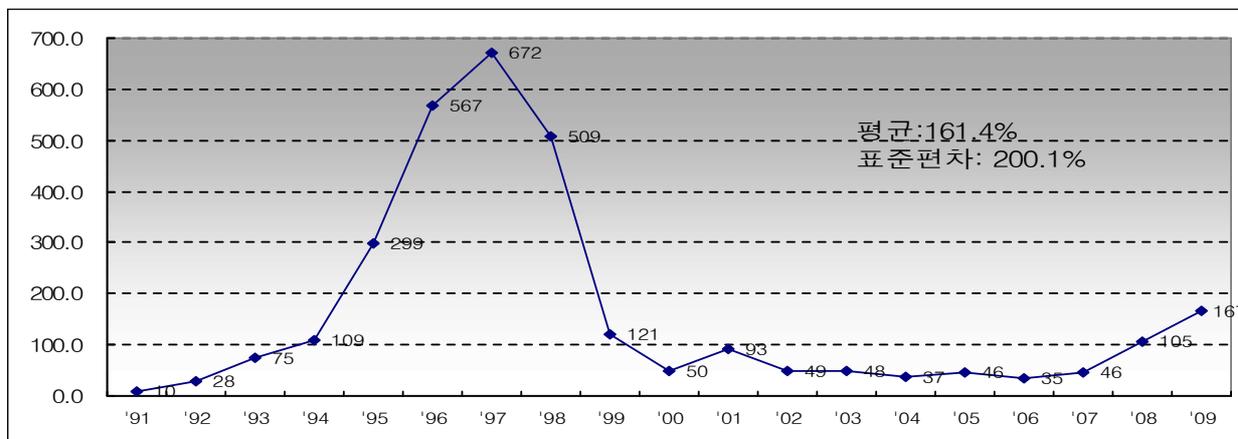
- 왜냐하면, 건설보증의 손실은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거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인 손해보험 영업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사에게 거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15년간(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손해보험과 보증보험 손해율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표준편차는 4.6%인데 반하여 보증보험은 119.9%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3> 참조).
- 건설보증만을 살펴보면 손해율의 변동성은 지난 1991년부터 2008년까지의 표준편차가 200.1%로 매우 큼(<그림 4> 참조).
- 또한, 건설보증은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이라는 형식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은행과 같이 엄격한 여신한도가 적용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금융 감독 당국은 손해보험사에 대하여 여신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현재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은 신용등급 등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보증한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림 3> 손해보험과 보증보험의 손해율 추이 및 변동성



자료 : 보험통계 포털서비스, www.insis.or.kr.

<그림 4> 건설보증의 손해율 추이 및 변동성(건설공제조합)



자료 : 건설공제조합 내부 자료

□ 손해보험사의 낮은 지급여력비율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 건설보증은 일반 손해보험 업무보다 높은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해야 하나, 현재의 손해보험사는 공제조합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지급여력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14> 참조).
-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은행의 BIS비율과 흡사한 개념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퇴출 대상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비율이 100% 이상이면 정상, 100% 미만이면 경영개선 명령을 통한 퇴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자본 + 조정금액)/max(보증수수료 × 17.8%, 보증대급금 3년 평균 × 25.2%).
- 손해보험사는 공제조합보다 훨씬 낮은 지급여력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외부 충격이 오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음.
- 손해보험회사에 「지급여력비율」이 가장 높은 삼성화재의 경우 374.8%에 불과한 데 비해 건설공제조합은 1만 4,586%,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만 8,361%에 달하고 있음.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지급여력금액은 자본금에서 실제로 지급여력금액으로 볼 수 없는 조합원에 대한 용자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했음. 예를 들어,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 조정금액을 합한 금액은 5조 6,744억원이나, 이 중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 2조 8,581억원을 차감한 2조 1,487억원을 건설공제조합의 지급여력금액으로 계산했음.

<표 14> 보증기관과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비교(2008년 기준)

(단위 : %)

내용	건설공제조합	전문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	서울보증	평 균
전업 보증기관	14,586	18,361	25,272	1,291	14,877.50
내용	삼성화재	LIG	현대해상	동부화재	평 균
손해보험사	374.82	193.6	190.76	192.6	237.94

□ 대기업 집단의 부실이 건설산업에 전이

-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의 기업으로 건설보증마저 손해보험사에게 개방하면 대기업 계열 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임.
- 현재 4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동부·현대·LIG)의 손해보험 보험료는 전체 손해 보험 보험료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대기업 집단에 경영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기업 집단의 부실은 계열 손해보험사를 매개로 건설보증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쳐 건설산업의 작동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수도 있음.

5. 선진국 사례

□ 일본

- 일본은 1952년 「전불금 보증사업법」을 제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전불금(우리나라의 선급금에 해당)제도와 이를 보증하는 건설업보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1952년 건설업자와 금융기관이 주로 출자하여 「동일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 「서일

본건설업보증주식회사」, 「북해도건설업 신용보증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00년에 「중일본건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음(<표 15> 참조).

- 건설업 보증회사는 1952년 설립 당시에는 전불금 보증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금융보증(일종의 대출보증)을 수행하다가 1995년부터 계약보증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일본은 1995년까지는 공사 계약시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공사완성보증인 제도(우리나라의 시공연대보증인제도와 흡사)를 운영하였고, 보증기관이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제도는 없었음.
- 1995년 공사완성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보증기관이 공사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설업보증주식회사는 전불금 보증 이외에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계약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건설보증은 건설업보증회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 및 은행과 경쟁하고 있음.
- 일본의 공사이행을 담보하는 보증 수단은 발주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발주자가 손해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표 15> 일본의 건설업보증회사

구 분	동일본	서일본	북해도	중일본
설립연월	1952.10	1952.11	1952.9	2000.10
소재지	도쿄	오사카	삿포르	나고야
자본금	20억엔	10억엔	4억엔	6천8백만엔
사업내용	전불금보증 계약보증 금융보증	전불금보증 계약보증 금융보증	전불금보증 계약보증 금융보증	전불금보증 계약보증

□ 미국

- 미국의 보증보험은 1935년 제정된 「Miller Act」에 의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반드시 「공사이행보증」(Performance Bond)과 「노임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Labor & Material Payment Bond)(이하 지급보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공사이행보증과 지급보증은 보증회사(Surety Company)가 담당하고 있는데, 보증회사는 보증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와 일반 손해보험회사가 별도의 부서로 운영하는 형태가 있음.
- 보증보험 중 건설보증은 아니지만 채권(Bond)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채권보증회사는 모노라인(Monoline)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시사점

- 일본은 건설보증이 법적으로는 경쟁 체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별로 설립된 건설업보증주식회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음.
 - 일본의 건설보증시장은 지역별로 전업사를 두어 정책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건설보증 업무를 일반 손해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으나, 미국 손해보험회사와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소유 구조는 상이함.
- 미국은 손해보험사와 건설기업이 계열 관계에 있지 않아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계열 소속 건설기업이 동일 계열의 손해보험사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건설보증시장은 매우 상이하고, 해당국가의 국민 경제적 상황에 맞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온 것임.

<표 16> 주요 국내 손보사 및 미국 보험사의 소유구조 비교(2007년 기준)

보험사	성명(명칭)	최대주주와의 관계	지분율 (%)	특수관계인 지분율	보험사	성명(명칭)	최대주주와의 관계	지분율 (%)
삼성화재	삼성생명	본인	9.41	100.0	AIG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본인	5.09
	삼성화재 (자사주)	특수관계인	7.94			Alliance Bernstein LP	관계 없음	3.53
	삼성카드	특수관계인	4.40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관계 없음	3.45
	삼성문화재단	특수관계인	2.78					
	기타	특수관계인	74.43					
현대해상	정몽윤	본인	21.67	21.7	Travelers	Alliance Bernstein LP	본인	6.41
	정경선	본인의 자	0.03			Barclays Global Investors NA	관계 없음	5.89
	정정이	본인의 자	0.01			Dodge & cox. Inc	관계 없음	4.86
LIG손보	구본상	본인	6.34	24.64	Safeco	LSV Asset Management	본인	5.63
	구자원	부계1촌	4.85			Vanguard Group	관계 없음	5.23
	구본업	부계2촌	3.29			Harris Associates LP	관계 없음	4.89

6. 정책 대안

- 건설보증시장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면 손해보험사는 신용이 좋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건설보증을 인수하는 영업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렇게 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의 가격 경쟁으로 대형 건설사의 보증수수료는 인하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가 건설보증 인수를 꺼리는 중소건설업체는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인상 또는 담보 등의 요구를 받을 것임.
- 만약 손해보험사와 기존의 공제조합이 중소건설업체까지 보증 인수에 대한 경쟁을 하게 되면, 손해보험사와 기존의 공제조합이 동반 부실화되어 건설보증시장의 기능과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있음.
- 공제조합의 경우 대형 건설회사의 이탈로 부실화될 것이며, 손해보험사 역시 건설보증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능력 부족과 재무 건전성 확보가 충분치 않아 건설 경기가

하락하는 등 위기 상황에 부딪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손해보험사에 대한 건설보증시장 개방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설문조사에서도 건설보증시장 손해보험사에 개방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1.0%에 불과하고, 50.7%가 건설보증시장 손해보험사 개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음(<표 17> 참조).

<표 17> 건설보증시장 손해보험사 개방에 대한 의견

(단위 : 개사, %)

문항	전체	종합건설	전문건설
찬성한다	55(11.0)	39(19.5)	16(5.3)
반대한다	254(50.7)	102(51.0)	152(50.5)
잘 모르겠다	188(37.5)	59(29.5)	129(42.9)
무응답	4(0.8)	0(0.0)	4(1.3)
합계	501(100)	200(100)	301(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비율임.

□ 현행 체제 유지

- 현행 건설보증시장은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보증·서울보증보험이 경쟁하는 구조이고, 건설업체가 새로운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진입할 수도 있는 시장임.
- 공제조합 간에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점차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임.
- 따라서,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현행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건설보증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보증기관의 발전적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서울보증의 건설보증업무도 건설공제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보증 전문기관에게 개방

- 만약 건설보증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건설업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보증회사 형태로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건설보증은 다른 보증보험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고 건설시장에서의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등 기능도 다름.
- 앞에서 지적했듯이 건설보증 구조는 건설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에 민감하고 거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보험 또는 다른 종류의 보증보험과도 겸업을 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보증을 수행할 수 있는 보증기관으로 공제조합과 주식회사 형태의 건설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건설보증 주식회사의 설립 요건을 기존의 보증보험사보다는 강화하여야 함.
- 또한, 건설보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보증기관만이 건설관련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함.
- 일본의 경우 특별법으로 4개의 건설업보증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채권(Bond)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보증보험은 모노라인(Monoline)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7.9%, ‘건설보증회사 형태의 개방’이 25.9%, 보증회사 형태의 개방이 14.8%로 나타났음.

<표 18> 건설보증시장 개방 형태

(단위 : 개사, %)

문항	전체	종합건설	전문건설
손해보험사에 개방	47(9.4)	30(15.0)	17(5.6)
보증회사에 개방	74(14.8)	36(18.0)	38(12.6)
건설보증회사 개방	130(25.9)	50(25.0)	80(26.6)
현재가 효율적	240(47.9)	82(41.0)	158(52.5)
무응답	10(2.0)	2(1.0)	8(2.7)
합계	501(100)	200(100)	301(100)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에 대한 비율임.

부록 : 설문조사

□ 표본의 구성 및 설문조사 기간

- 설문조사 표본은 종합건설업체 200개사, 전문건설업체 301개사로 구성됨.
- 종합건설업체는 대형건설업체(토건 시공능력평가 50위 이내)의 업체 20개사, 중견업체(토건 시공능력평가 51위에서 100위 이내) 20개사, 중기업(토건 시공능력평가 101위에서 200위 이내) 52개사, 소기업(토건 시공능력평가 201위 이하) 87개사로 구성됨.
- 전문건설업체도 규모별로 안분하였음.
- 설문조사 기간 : 2009년 9월 3~7일

□ 설문내용 및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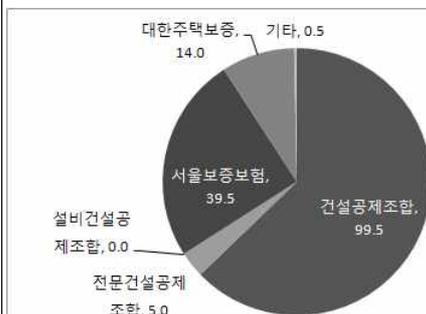
■ 보증업무에 관한 사항

※ 아래 문항은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제조합)의 건설보증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4. 귀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보증은 어느 기관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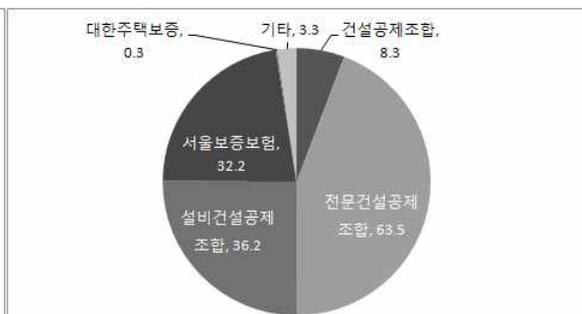
- ① 건설공제조합()
- ② 전문건설공제조합()
- ③ 설비건설공제조합()
- ④ 서울보증보험()
- ⑤ 대한주택보증()
- ⑥ 기타()

<종합건설>



N=200개사(중복응답)

<전문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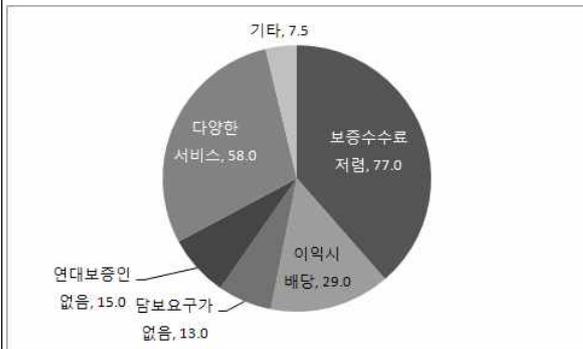
N=301개사(중복응답)

문5.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의 문항에서 ①②③번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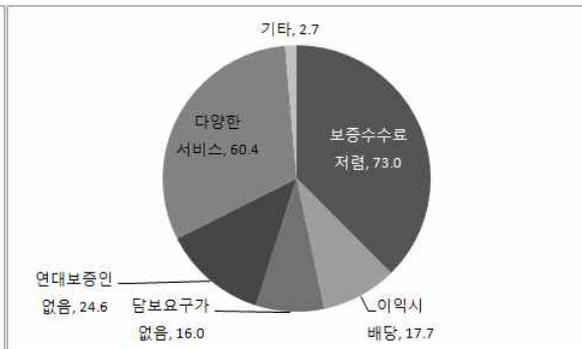
- ① 보증수수료가 서울보증보다 저렴하여 공제조합을 이용한다()
- ②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공제조합을 이용한다()
- ③ 서울보증은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이용한다()
- ④ 서울보증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이용한다()
- ⑤ 다양한 서비스 등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이용한다()
- ⑥ 기타()

<종합건설>



N=200개사(중복응답)

<전문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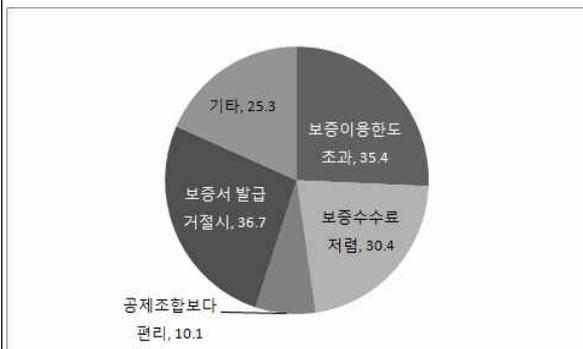
N=293개사(중복응답)

문6. 공제조합 이외에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의 문항에서 ④번에 응답한 경우만 해당) (복수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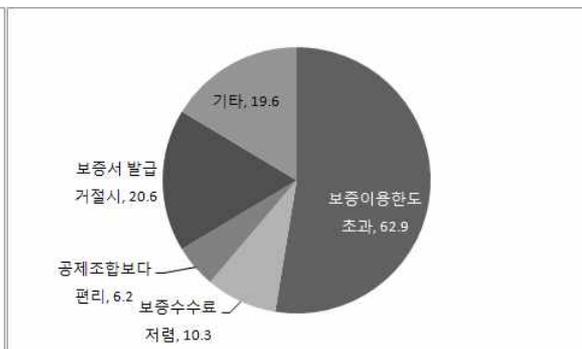
- ① 공제조합의 보증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한다()
- ② 보증수수료가 서울보증보험이 공제조합보다 싼 경우가 있어서()
- ③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경우 불편한 점이 있어서()
- ④ 공제조합 보증서 심사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경우 서울보증을 이용한다()
- ⑤ 기타()

<종합건설>



N=79개사(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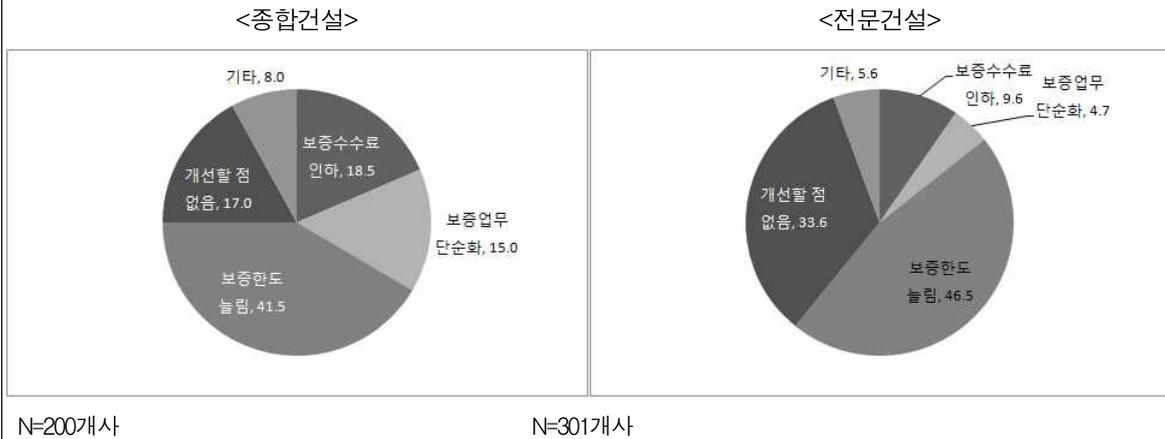
<전문건설>



N=97개사(중복응답)

문7. 공제조합의 건설공사 보증 업무에 관하여 가장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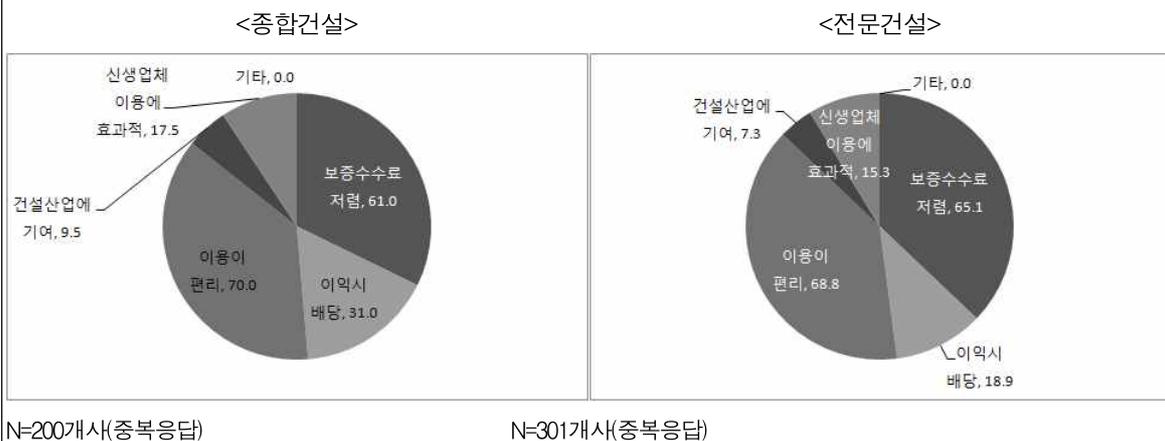
- ① 보증수수료가 과다하므로 보증수수료를 인하하여야 함()
- ② 보증 업무에 관한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므로 단순화하여야 함()
- ③ 보증한도를 늘려야 한다()
- ④ 특별히 개선할 점이 없다()
- ⑤ 기타()



문8. 공제조합의 건설공사 보증 업무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보증수수료가 저렴하다()
- ②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③ 이용하기 편리하다()
- ④ 건설보증 이외의 사업으로 건설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 ⑤ 신생업체 및 건설한 영세 중소기업체가 이용하기에 효과적이다()
- ⑥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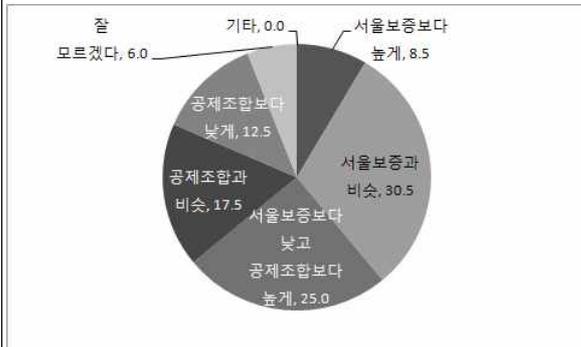


■ 보증시장 개방 관련

문9. 현재 건설보증업무를 손해보험회사에 개방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건설보증업무가 손해보험회사에 개방되면 손해보험사는 귀사의 보증수수료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책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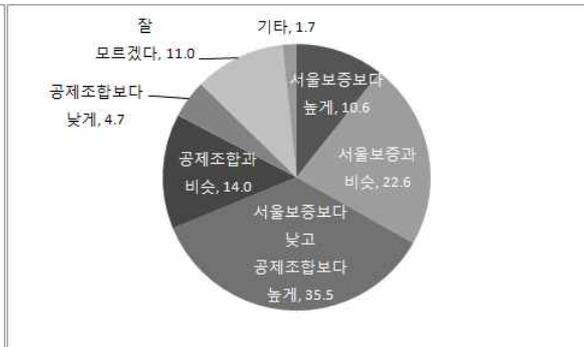
- ① 서울보증보다 높게 책정할 것이다()
- ② 서울보증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할 것이다()
- ③ 서울보증보험보다는 낮고 공제조합보다는 높게 책정할 것이다()
- ④ 공제조합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할 것이다()
- ⑤ 공제조합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종합건설>



N=200개사

<전문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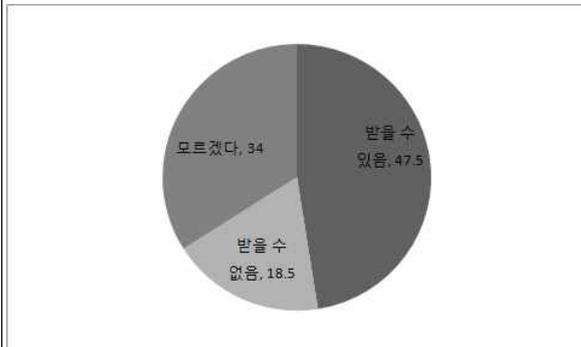


N=301개사

문10. 만약 건설보증업무가 개방되면 귀사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건설공사 보증을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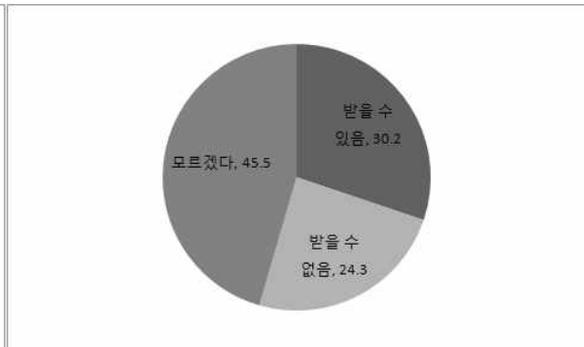
- ①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발급받지 못 할 것이다()
- ③ 잘 모르겠다()

<종합건설>



N=200개사

<전문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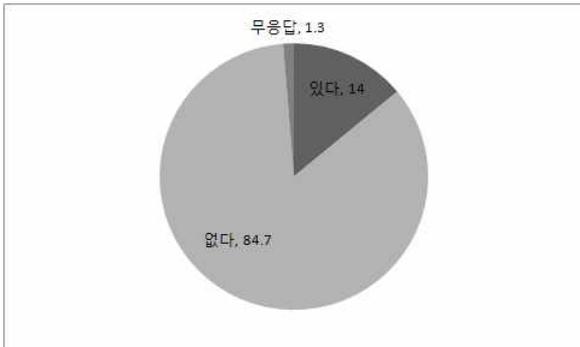


N=301개사

문11. 귀사는 건설공사 관련 보험(근로자재해 보험, 건설공사 보험 등)을 발주자(원도급업체) 계열사 손해보험회사를 이용하라는 직·간접적인 권유 또는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주력업종이 전문 또는 설비 업종인 경우만 해당)

- ① 있다()
- ② 없다()

<전문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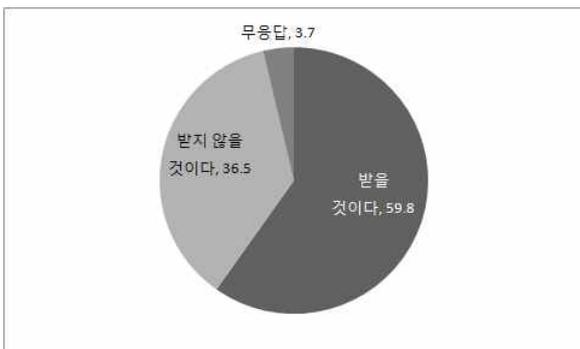


N=301개사

문12. 손해보험사에 건설보증시장이 개방되면 원도급자(발주자)로부터 건설보증 업무를 계열사 손해보험회사를 이용하라는 직·간접적인 권유 또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력업종이 전문 또는 설비 업종인 경우만 해당)

- ① 발주자(원도급업체)로부터 손해보험회사를 이용하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 ② 발주자(원도급업체)로부터 손해보험회사를 이용하라는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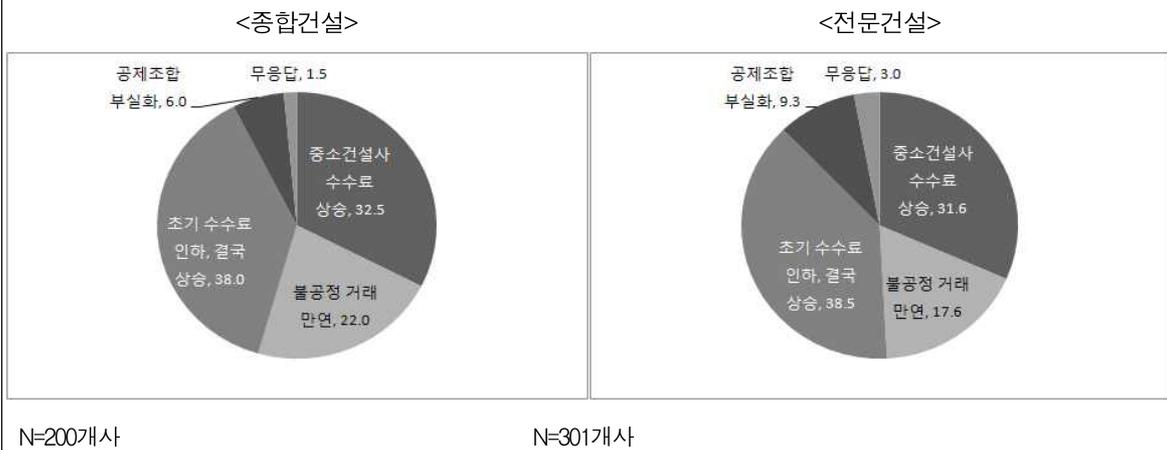
<전문건설>



N=301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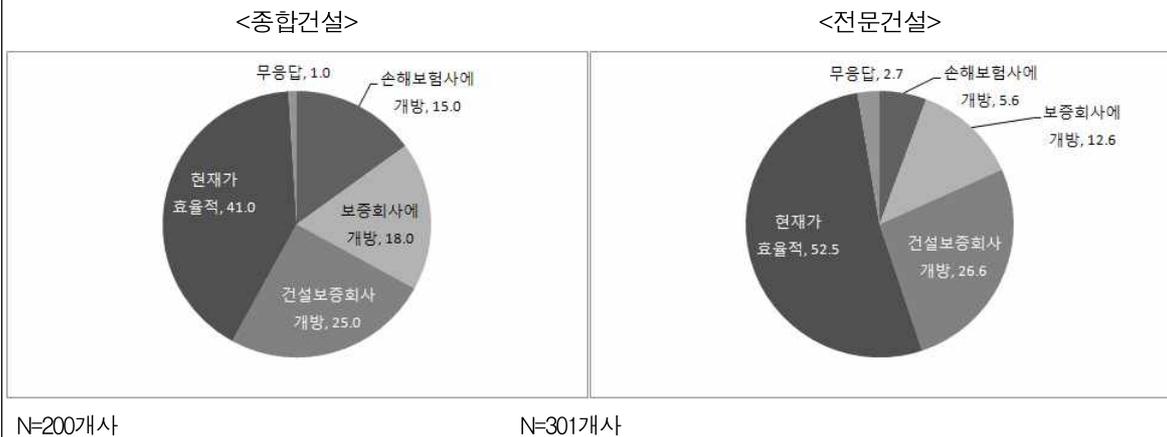
문13. 건설보증시장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기업 위주로 건설보증을 발급하게 되어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사는 수수료가 상승할 것이다()
- ② 계열사간 거래, 손해보험사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할 것이다()
- ③ 초기에는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나 결국 손해보험사 위주로 건설보증시장이 재편되면 수수료가 상승할 것이다()
- ④ 기존 공제조합이 부실화될 것이다()



문14.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하는 다음의 방안에 대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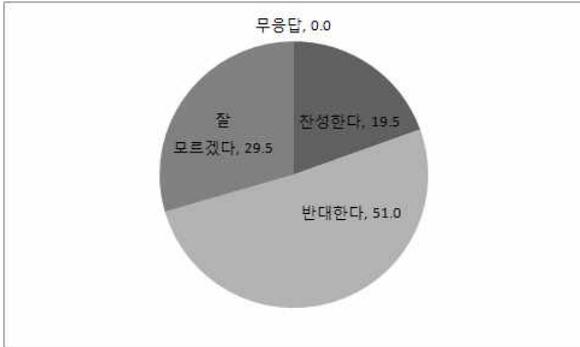
- ① 손해보험사에게 건설보증 업무를 개방하여야 한다()
- ② 서울보증과 같은 전업 보증회사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 ③ 건설업 보증만을 영위하는 건설보증회사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 ④ 현재와 같이 공제조합과 서울보증과의 경쟁 체제가 건설보증 개방보다 효율적이다()



문15. 귀하는 건설보증시장을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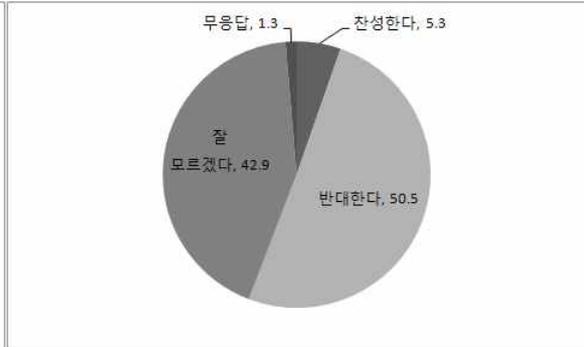
- ① 찬성한다()
- ② 반대한다()
- ③ 잘 모르겠다()

<종합건설>



N=200개사

<전문건설>



N=301개사

연구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종광,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위원

빈재익, 연구위원